

보육교사교육원 규정

제정 2001. 9. 1. 전문개정 2013. 7. 1.
개정 2015. 3. 31. 개정 2016. 11. 9.
개정 2017. 3. 1. 개정 2017. 5. 2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교육원의 명칭은 대경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(이하 교육원)이라 칭한다.

제3조(소재지) 본 교육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번지 대경대학교내에 둔다.

제 2장 교육 운영

제4조(교육 과정) 교육원은 제 1조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.

- ① 보육교직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교사양성 교육과정
- ②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승급 및 직무 교육과정
- ③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<개정 2016.11.9.>

제5조(입학정원 및 교육 대상) ① 입학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의 입학정원은 주간100명으로 한다.
- 2. 보수교육과정의 정원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년도마다 경상북도에서 선정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.
- 3. 기타교육과정은 따로 정한다.

②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은 고등학교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.
- 2. 보수교육과정은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여 그 과정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.3.31.]

제6조(전형방법) ①입학생의 선발은 면접, 서류전형 등의 방법으로 하되, 필요시 경상북도와 협의한다.

②입학생 선발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③입학이 확정 후 재학 중 또는 수료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미달임이 밝혀질 때는 입학 및 수료가 취소된다.

[본조신설 2015.3.31.]

[중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<2015.3.31.>]

제7조(제출서류) ①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입학지원서(소정양식)1부

2.최종학력증명서1부

3.사진(3cm×4cm)3매

4.기타 필요한 서류

[본조신설 2015.3.31.]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교육원의 교육계획 수립, 교재편찬 등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심의하고 보육교사 교육원장(이하 “원장”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는 교육훈련시설의 장, 전임교수, 수강생대표, 보육관련 지역인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 단, 양성교육과정을 휴지한 경우에는 수강생 대표는 위원에서 제외된다. <개정2017.5.23.>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교육원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2. 본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본 교육원의 교육계획 수립, 교재편찬, 학사관리, 학생관리, 평가관리 및 전임교수 임면 등 교육훈련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, 수강생의 출결기준 미충족, 평가시험 부정 등으로 인한 미수료 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. <개정 2016.11.9.>

4.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 등 기타 본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11.9.>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⑥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. <신설 2016.11.9.>

[본조신설 2015.3.31.]

[중전 제6조에서의 이동 <2015.3.31.>]

제9조(교재의 편찬) 교재는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장 학사 관리

제10조(등록) ①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및 보육교직원보수교육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미등록 처리한다. <개정 2016.11.9.>

1. 등록금은 도지사가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, 단 재학생 대표는 제외 한다.
2. 양성교육과정 등록금은 년 1회 수납을 원칙으로 하되, 2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3. 보수교육과정 등록금은 1회 수납으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11.9.>

[전문개정 2015.3.31.]

제11조(등록금 환불) ① 제적, 자퇴, 출석시간 미달자에 대한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 <별표 1.>에 의한다. <개정 2017.3.1.>

②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서를 제출한 경우 등록금 환불사유 발생일은 휴학원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.3.31.]

제12조(휴학·복학) ① 원장은 보육교사양성교육 과정의 교육생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.

1.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할 때
 2.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② 복학을 원하는 자는 차기 동일 과정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다.
- ③ 휴학 기간은 최고 1년 이내로 한다.
- ④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전반기 교육 중에 휴학한 자는 차기 전반기 교육 개시 전에, 후반기 교육 중에 휴학한 자는 후반기 교육 개시 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⑤ 휴학 기간 중에 동일 교육 과정에 해당 반이 설치되지 않거나 본 규정 제 8조 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복학의 자격을 상실한다.

제13조(제적)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.

- 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료 교육을 받게 한 때
- ② 수업시간 출석기준에 미달한 때 <신설 2016.11.9.>
- ③ 수업 태도가 극히 태만할 때
- ④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
- ⑤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
- ⑥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때

제14조(이수 교과목) ① 보육교사양성과정의 이수교과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<별표

2>에 의한다.

② 보육교직원보수교육과정의 이수교과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. <신설 2016.11.9.>

③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교과목은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.

제15조(수료 인정 및 출결관리) ① 보육교사양성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료를 인정한다.

1. 학점 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80%이상 출석하여야 한다.

2. 각 과목 70점 이상으로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3. 보육실습은 4주 160이상으로 한다. 단 2016.08.01. 이후 입학자부터는 6주 240시간 이상으로 2회에 나누어 실시 할 수 있다.

4. 1~3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수료를 인정한다.

② 보육교사보수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료를 인정한다. <개정 2016.11.9.>

1. 직무교육 40시간 승급교육 80시간으로 100% 출석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11.9.>

2. 승급교육은 80문항이상의 시험에서 80점 이상으로 8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.

3. 예외적 출석인정범위는 당해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며,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. <신설 2016.11.9.>

4. 1~3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수료를 인정한다. <신설 2016.11.9.>

③ ①,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해당 년도 보육사업안내의 이수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따른다. <신설 2016.11.9.>

제16조(장학) 학업이 우수하거나 공적이 뚜렷한 교육원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인원 및 수혜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 4 장 학생 관리

제17조(자치 활동) 원장은 교육 기간 중 질서 있는 생활 기풍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생 중에서 학생장 및 총무 등을 선출하여 필요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원시설 이용) 교육생은 교육원에서 설치한 각종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19조(수강 태도) ① 교육생은 교육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

② 원장은 수시로 교육생의 수강 자세를 점검할 수 있다.

③ 근태 상황 점검은 출석부에 의하여 수업 시간마다 점검한다.

제20조(교육생 준수 사항) 교육생은 교육 기간 중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① 교육원 내에서는 고성 방가나 음주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
- ② 제반 교육 시설물과 반납을 조건으로 지급된 물품을 소중하게 이용하여야 한다.
- ③ 기타 교육원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

제 5 장 평가 관리

제21조(평가관리) 평가 관리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운영지침을 준수한다.

제 6 장 교직원

- 제22조(구성)** ① 교육원의 원활한 교학 관리를 위하여 원장, 전임교수, 외래교수, 사무직원을 둔다.
- ② 원장은 본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③ 전임교수 (외래교수 포함)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적정수의 인원을 원장이 선정하여 임명한다.
 - ④ 사무직원은 원장이 선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.

제23조(교직원 임용기준 및 절차) 교직원의 임용기준 및 절차는 본 대학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7 장 자산 및 회계

- 제24조(자산 구분)** ① 교육원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지원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.
- ② 기본 재산은 강의실, 실기 실습실, 사무실, 교수 연구실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지원재산으로 한다.
 - ③ 기본 재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25조(재정) 교육원의 재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① 수강료
- ② 보조금
- ③ 기타수입

제26조(회계) 교육원의 회계는 본 대학 특별회계로 한다.

제27조(회계년도)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를 준용한다.

제28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본 규정은 (중전)대경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규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.>

등록금 환불 기준(제 11조 관련)

1. 당해 학년도 교육개시일(입학생은 입학 일을 말함)이전에 입학포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한다.
2. 교육개시일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<개정 2017.3.1.>
3. 교육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<개정 2017.3.1.>
4. 교육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<개정 2017.3.1.>
5. 교육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이후는 반환하지 아니함 <개정 2017.3.1.>
6. 각 호 이외의 사항은 교육부령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환불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1.>

<별표 2. > [제목 개정 2017.3.1.][전문 개정 2017.3.1.]

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(제14조 관련)

이수영역	교과목 (학점)	이수과목 (학점)
가. 교사인성	보육교사(인성)론(3학점), 아동권리와 복지(3학점)	2과목 (6학점)
나. 보육지식과 기술	보육학개론(3학점), 보육 과정(3학점), 영유아 발달 및 지도(3학점), 아동생활지도(3학점),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(3학점),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(3학점), 놀이지도(3학점), 언어지도(3학점), 아동음악과 동작(3학점), 아동미술지도(3학점), 아동수학지도·아동과학지도(3학점), 영유아 교수방법론(3학점), 교재교구개발(3학점), 부모교육(3학점), 영유아 건강지도(3학점), 영유아 영양지도(2학점), 아동안전관리(3학점), 어린이집운영관리(3학점)	18과목 (52학점)
다. 보육 실무	아동관찰 및 실습(3학점), 보육실습(4학점)	2과목 (7학점)

※ 비고

1.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보육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.
3. 보육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하되,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4. 22과목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